

# 평창군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0
----------	----

제출년월일 : 1999. 6.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안이유

'95. 8. 4 폐기물관리법 및 '96. 2. 5 동법시행규칙의 개정예따라 상위법과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골자

가. 생활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지역 지정에 따른 적용근거를 시행규칙 제6조를 제7조로 변경함(안제5조제1항)

※ '96. 2. 5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

나.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적용근거를 시행규칙제7조를 법제1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변경(안제6조제2항)

※ '95. 8. 4 폐기물관리법 개정

다. 생활폐기물자체수집·운반처리자 지정, 허가등에 관한 적용근거를 법제17조를 법제26조제1항으로 변경

(안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2조)

라. 생활폐기물보관시설등의 재질을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규정(안제10조제3항제1호)

※ '96. 2. 5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

## 3. 참고사항

○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시행규칙제6조"를 "시행규칙제7조"로 한다.

제6조제2항중 "시행규칙제7조"를 "법제13조제1항"으로 하며, "법제17조"를 "법제13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법제17조"를 "법제26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법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생활폐기물처리는 동조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가 각각 이를"을 "법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가목중 "금속, 플라스틱등 내수성 재료로 만들어야 한다"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법제17조제2항제1호"를 "법제26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법제17조제2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12조"를 "법제2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7조"로 하며, 동조제3항중 "법제17조제2항제1호"를 "법제26조제1항"으로 "법제45조"를 "시행규칙제17조"로 한다.

제12조중 "법제17조제2항제1호"를 "법제26조제1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의제외지역 지정)                      ①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생활폐기물관리구역의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2.(생략)                      ②~③(생략)</p> <p>제6조(생활폐기물의 처리등) ①(생략)                      ②군수는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며 <u>법제17조</u> 규정의 폐기물 처리업자가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제7조(생활폐기물 자체수집·운반처리자 지정등) 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1일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300kg이상으로서 쓰레기 자체수집·운반처리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청하고, 군수는 이를 지정하여 <u>법제17조</u>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3.(생략)                      ②~④(생략)</p> <p>제8조(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 및 수집·운반등) ①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에 있어 수집·운반은 <u>법제17조제2항제1호</u>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생활폐기물 처리는 <u>동조제2호, 제3호</u>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가 각각 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⑤(생략)</p> <p>제10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②(생략)                      ③제1항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p>	<p>제5조(생활폐기물관리구역의제외지역 지정)                      ①시행규칙 제7조 . . . . .                      . . . . .                      1.~2.(현행과 같음)                      ②~③(현행과 같음)</p> <p>제6조(생활폐기물의 처리등)①(현행과같음)                      ② . . . <u>법 제13조제1항</u> . . . . .                      . . . . .  <u>법 제13조제2항</u> . . . . .                      . . . . .</p> <p>제7조(생활폐기물 자체수집·운반처리자 지정등) ① . . . . .                      . . . . .                      . . . . .                      . . . . .  <u>법 제26조제1항</u> . . . . .                      . . . . .                      1.~3.(현행과 같음)                      ②~④(현행과 같음)</p> <p>제8조(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 및 수집·운반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u>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로 한다)</u>로 하여금 . . . . .</p> <p>②~⑤(현행과 같음)</p> <p>제10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p>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1.(생략)</p> <p>가. <u>금속·플라스틱 등 내수성 재료로 만들어야 한다.</u></p> <p>나.~라.(생략)</p> <p>제11조(폐기물 처리업 허가)①<u>법 제17조제2항제1호</u>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의 관할구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한다.</p> <p>②군수는 <u>법 제17조제2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12조</u>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현재 및 장래의 생활폐기물 발생량과 기존 폐기물 처리업자의 폐기물 처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규제할 수 있다.</p> <p>③군수는 생활폐기물 처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u>법 제17조제2항제1호</u>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하여는 <u>법 제45조</u>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타시설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p> <p>④(생략)</p> <p>제12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u>법 제17조제2항제1호</u>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 처리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도 제고를 공중위생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연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p> <p>1.~4.(생략)</p>	<p>1. (현행과 같음)</p> <p>가.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p> <p>나.~라.(현행과 같음)</p> <p>제11조(폐기물 처리업 허가)①<u>법 제26조제1항</u> . . . . .</p> <p>. . . . .</p> <p>. . . . .</p> <p>② . . . <u>법 제26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7조</u> . . . . .</p> <p>. . . . .</p> <p>. . . . .</p> <p>③ . . . . . <u>법 제26조제1항</u> . . . . .</p> <p>. . . . . <u>시행규칙 제17조</u> . . . . .</p> <p>. . . . .</p> <p>④(현행과 같음)</p> <p>제12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 . . . .</p> <p><u>법 제26조제1항</u> . . . . .</p> <p>. . . . .</p> <p>. . . . .</p> <p>. . . . .</p> <p>1~4.(현행과 같음)</p>